

# ① 國務總理·國務委員 不信任

○ 現行: 199

第 99 條 ①國會는 國務

總理 또는 國務委員에

대하여 個別的으로 그

解任을 議決할 수 있

다. 다만, 國務總理에 대

한 解任議決은 國會가

任命同意를 한 後 1

年 以內에는 할 수

없다.

②第 1 項의 解任議決은

國會在籍議員 3 分の 1

以上の 發議에 의하여

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

贊成이 있어야 한다.

③第 2 項의 議決이 있

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

務總理 또는 당해 國

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

다. 다만, 國務總理에

대한 解任議決이 있을

때에는 大統領은 國務

總理와 國務委員 全員

을 解任하여야 한다.

○ 改正案: 162

現行과 같음

○ 改正案: 164

第 64 條 ①國會는 國務

總理 또는 國務委員의

解任을 大統領에게 建

議 할 수 있다.

②前項의 建議는 在籍

議員 過半數의 贊成이

있어야 한다.

③第 1 項과 第 2 項에 의

한 建議가 있을 때에

는 大統領은 特別한 事

由가 없는 限 이에 應

하여야 한다.

- 解任議決權이 解任建議權보다 大統領을 구속하는 效力이 강한 것 같이 보이나
- 國會의 解任建議가 있을 경우 그 政治的 效果에 있어서는 解任議決과 다를 바가 없음.

○ 權力分立의 原則上 「建議」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으며 특히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을 인정할 경우 兩制度의 均衡上 「議決」이 보다 적당한 표현이라 하겠음.

○ 國務總理 解任議決權 관련문제

- 民主黨案 등에서는 國務總理 解任建議時 전체 委員이 解任되도록 하는 連帶責任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國

務委員은 國務總理의 제청으로 任命하여 또한 解任될 수 있게 한 취지와 다소 맞지 아니한 점이 있음.

- 또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國政遂行의 安定性을 어느정도 보장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就任後 1年間 解任議決을 制限할 必要가 있음.